셉티코 산업안전 환경 알리미

Safetyko
㈜ 셉티코

2020-SAFETYKO-06월호

셉티코 고객사님 안녕하십니까! **셉티코 산업안전 환경 알리미**입니다.

이번 달 알리미는 「**화학물질관리법**」**에 따른 "영업허가 비대상 업체의 주요 준수사항"** 을 안내해 드립니다. 특히 **영업허가 비대상 업체의 화학물질관리법 준수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문의가 많아** 환경부 자료를 인용하여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1.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비대상 사업장 주요 준수사항 (출처 : 환경부)

「화학물질관리법」 관련 조항	영업허가 대상	영업허가 비대상	비 고
제13조 (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)	○	○	
제14조 (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)	○	○	
제16조 (유해화학물질의 표시)	○	○	
제23조 (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 작성·제출)	○	○	소량취급자는 간이 작성
제24조 (취급시설의 배치·설치 및 관리기준)	○	○	
제26조 (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)	○	○	
제28조 (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)	○	-	신규지정 유독물 유예기간 적용
제31조 (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)	○	-	
제32조 (유해화학물질 관리자)	○	-	영업허가 비대상도 자체 선임 권고
제33조 (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)	○	-	영업허가 비대상도 교육 이수 권고
제40조 (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)	○	○	사고대비물질 취급시 허가 비대상도 적용
제41조 (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·제출)	○	○	지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경우만 해당
제43조 (화학사고 발생신고)	○	○	
제44조 (화학사고 현장 대응) [환경청+지자체]	○	○	
제49조 (보고 및 검사)	○	△	사고대비물질 취급시 허가 비대상도 적용
제50조 (서류의 기록·보존)	○	△	사고대비물질 취급시 허가 비대상도 적용
제57조 ~ 제64조 (벌칙)	○	△	허가 비대상도 해당 시 적용

※영업 허가 비대상 사업장의 경우에도 유해화학물질 관리자/취급자 교육을 이수하여 관련 내용 숙지 권고

산업안전 환경컨설팅
장외영향평가, 설치검사
PSM/이행평가/자체감사/위험성평가
위해관리계획서
유해위험방지계획서
위험물인허가
안전보건개선계획서

플랜트설계, 구매 , 공사(EPC)
방폭/산업안전 EPC
전문소방설계 및 공사
산업플랜트
화공/전력 플랜트
원자력/발전플랜트
특수설계&컨설팅

산업안전 환경진단
안전관리대행
산업안전진단
연구실정밀안전진단
사업장 시설물관리
비산배출진단점검

산업안전 환경 전문기업
| 주식회사 셉 티 코 |
www.safetyko.co.kr
서울본사 :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8 2동 803호 (가산동, IT캐슬) | Tel : 02-6263-7702 | Fax : 02-6263-7703
부산본부 : 부산시 중구 충장대로 9번길 43 보승빌딩 206호 | Tel : 051-465-7702 | Fax : 051-465-7705

셉티코 산업안전 환경 알리미

Safetyko
㈜ 셉티코

2020-SAFETYKO-06월호

2.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비대상 사업장 주요 내용 및 규정 (출처 : 환경부 / 첨부1, 첨부2 자료 참조)

「화학물질관리법」 관련 조항	주요 내용	세부 규정
제13조 (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)	○ 누구든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취급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- 적절하게 유지·관리, 안전사고 예방대책 강구, 방재장비와 약품 구비, 혼합 보관·저장 금지, 상·하차 시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입회 등	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[별표 1] **(첨부1. 참조)**
제14조 (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)	○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적합한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함 ※ 기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, 액체 유해화학물질에서 증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, 분말이나 미립자 형태 등이 체류·비산 우려가 있는 경우	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 (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7-7호)
제16조 (유해화학물질의 표시)	○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, 보관·저장시설, 출입구·부지경계 등에 표시하여야 함	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[별표 2] **(첨부1. 참조)**
제24조 (취급시설의 배치·설치 및 관리기준)	○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치·설치·관리기준에 따라 설치·운영되어야 함 ※ 현장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바로 조치, 최종 개선완료 후 취급시설 검사 이행	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[별표 5], 검사규정(환경부고시 제2019-157호)
제26조 (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)	○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는 주 1회 이상 점검 실시 - 설비 부식 등으로 인한 유출·누출여부, 용기 밀폐보관 여부, 용기 파손·부식·균열 발생 여부, 반응성 물질 화재·폭발 가능성 여부, 누출감지장치·안전밸브·경보기 및 온도·압력계기 정상작동 여부 등	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42호 서식] '자체점검대장' **(첨부1. 참조)**
제40조 (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)	○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외부인 출입관리 기록 등 관리기준을 지켜야 함	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[별표 9] **(첨부1. 참조)**
제43조 (화학사고 발생신고)	○ 화학사고 발생시 위해방제에 필요한 응급조치 실시, 중대성·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취급시설 가동 중단, 관계기관 즉시 신고(15분 이내)	화학사고 즉시 신고에 관한 규정 (환경부예규 제632호)
제50조 (서류의 기록·보존)	○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한 사항을 5년간 기록·보존하여야 함	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75호~제78호 서식] **(첨부1. 참조)**

산업안전 환경컨설팅
장외영향평가, 설치검사
PSM/이행평가/자체감사/위험성평가
위해관리계획서
유해위험방지계획서
위험물인허가
안전보건개선계획서

플랜트설계, 구매 , 공사(EPC)
방폭/산업안전 EPC
전문소방설계 및 공사
산업플랜트
화공/전력 플랜트
원자력/발전플랜트
특수설계&컨설팅

산업안전 환경진단
안전관리대행
산업안전진단
연구실정밀안전진단
사업장 시설물관리
비산배출진단점검

산업안전 환경 전문기업
| 주식회사 셉 티 코 |

www.safetyko.co.kr
서울본사 :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8 2동 803호 (가산동, IT캐슬) | Tel : 02-6263-7702 | Fax : 02-6263-7703
부산본부 : 부산시 중구 충장대로 9번길 43 보승빌딩 206호 | Tel : 051-465-7702 | Fax : 051-465-7705